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02
----------	------

제출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는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관련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법의 위임근거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나.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의 위임에 따라 향후 제정할 규칙에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2) 입법예고('20. 7. 30.~8. 19.)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하천관리과 이 순 호 (2133-3871)